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64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김종민 · 박희승 · 박수현
한창민 · 문진석 · 최혁진
전종덕 · 위성곤 · 윤종오
손 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입법 과정을 통해 민의를 담을 책무가 있음. 그러나 그 입법 과정에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정쟁의 소재가 되거나, 민생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관의 진영화된 대립 상황 등으로 국민의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 성별 ·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구성함.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

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숙의, 공론 과정을 통해 평균에 수렴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는 이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57조의3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 본문 중 “이 조에서 같다”를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로 한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안전공론화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는 안전을 공론조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민을 위원으로 하는 안전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공론화위원의 지역, 성별, 연령 등은 전체 인구 또는 해당 안전과 관련된 인구 분포와 비례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론화위원장이 선

출될 때까지는 공론화위원 중 연장자가 공론화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론화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론화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재적 공론화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공론화위원장은 의결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⑧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서가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론화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표결할 때 제7항에 따른 의견서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⑩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민을 위원으로 하는
안전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
만,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
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
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장”이라 한다) 1명
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공론
화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이라 한다)으로 구
성한다.

④ 공론화위원의 지역, 성별,
연령 등은 전체 인구 또는 해
당 안전과 관련된 인구 분포와
비례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론화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는 공론화위
원 중 연장자가 공론화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론화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론화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의견서를 재적 공론화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공론화위원장은 의결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⑧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전에 대한 의견서가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론화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표결할 때 제7항에 따른 의견서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⑩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